

# 청 주 지 방 법 원

## 제 1 2 민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12가합2382 손해배상(기)  
원 고 ○○○  
대구 서구  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원  
피 고 ○○○ (중화인민공화국인)  
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  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섭  
변 론 종 결 2012. 10. 24.  
판 결 선 고 2012. 11. 7.

### 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# 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1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

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## 이 유

### 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08. 9. 12. 피고, ◇◇◇, ◆◆◆과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에 탄소섬유 직물 합자기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, 탄소섬유직물을 직조하는데 사용되는 래피아(중고 고속직기) 8대, 섹스널와퍼(중고 정경기) 1대(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)를 제공하였고,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인도받아 이를 중화인민공화국 심양시 ○○구 ○○자 ○○○○촌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 보관하였다.

나. 원고는 2008. 11. 10. 위 동업계약에서 탈퇴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하였고, 서울고등법원 2010나\*\*\*\*\* 사건에서 2011. 9. 29.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라는 판결(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)이 선고되었으며, 위 판결은 같은 해 10. 20. 확정되었다.

다.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2011. 11. 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본\*\*\*\*\*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집행신청을 하였으나, 위 법원의 집행관은 같은 달 17. 이 사건 기계가 대한민국 사법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장소에 있어 집행관이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집행을 거절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

### 2. 원고의 주장 및 판단

가. 원고의 주장

원고는,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가 집행

관의 집행거절에 따라 이행불능이므로 이행불능에 따른 대상청구권을,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피고의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주장하면서, 이 사건 기계의 시가 상당액인 170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.

나.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살피건대, 대상청구권은 채무의 이행을 불능케 하는 사유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, 대상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하게 되어야 하고, 급부를 불능하게 하는 사정의 결과로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에 관하여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여야 하는바(대법원 2003. 11. 14. 선고 2003다35482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기계에 대한 인도집행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피고가 이 사건 기계를 대신하는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.

다.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

1)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의무는 특정물인도 의무이고,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의무가 성립할 당시 이 사건 기계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 보관되어 있었으므로,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의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이른바 추심채무에 해당한다(원고도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의무가 추심채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).

2) 나아가 추심채무에서는 채무자의 이행에 채권자의 추심행위가 필요하므로 채무자는 목적물을 분리하여 채권자가 추심하러 온다면 언제든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놓아 두고, 채권자에게 그 수령을 통지한 때에 적법한 변제의 제공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(민법 제460조 단서),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이행의 제공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, 을 제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피고의 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, 피고가 이 사건 기계의 인도 준비를 완료하였음을 통지하고, 이 사건 기계의 수령을 최고하는 내용이 담긴 피고의 2012. 9. 17.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, 피고는 이 사건 기계의 인도의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마쳤다고 할 것이어서,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.

### 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 판사            박정희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판사            이화송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판사            박보미